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6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신규,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위탁을 희망하는 동 중 3개 동에 대해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3) 위탁 기간이 2026. 12. 31.자 만료 예정인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심의·의결 되었음.
4)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 동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3) 위탁사무의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해임) 등)
- 자원봉사자 관리 및 민원 처리, 기타 관련 사무 등

4) 위탁 개요

[신 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 위탁 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 대상: 3개 동 주민자치회
- 위탁 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후 수의계약
  ・ 위탁 희망 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위탁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 예산: 102,96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합 계	운영비	강사수당	보조간사수당
신규위탁 (3개 동)	**102,960**	18,000 6,000천원 × 3개동	56,160 18,720천원 × 3개동	28,800 9,600천원 × 3개동

[재계약]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위탁 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 대상: 정림동 주민자치회
- 위탁 방법: 정림동 주민자치회와 수의계약
- 위탁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 예산: 36,7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합 계	운영비	강사수당	보조간사수당	자원봉사활동보상금
재계약	**36,720**	6,000	18,720	9,600	2,400

-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위원회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심의일시) 2026. 8. 20.(목) ~ 8. 24.(월) / 서면심의
  - (심의내용)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심의
  - (심의결과) 기존 수탁자(정림동 주민자치회)와 재계약 적격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주민자치회는 지역적 특성 파악 및 실질적인 수요 반영 등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적합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신규 신청 3개 동과 재계약 1개 동(정림동)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신규 3개 동은「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으로 추진하고 정림동(2026. 12. 31.위탁만료)은 동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재위탁 적격’으로 심의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신규,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4601

제출년월일 : 2026. 8. 27.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위탁을 희망하는 동 중 3개 동에 대해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다. 위탁 기간이 2026. 12. 31.자 만료 예정인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심의·의결 되었음.

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의회 동의)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사무 세부사항 ◀

■ 주요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 관리 제외)
- 프로그램 운영、관리(개설, 변경, 폐강 등)
- 수강생 관리(등록, 출석확인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선정、해임) 등)
- 자원봉사자 관리 및 민원 처리, 기타 관련 사무 등

라. 위탁 개요

[신　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 위탁 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 대상: 3개 동 주민자치회
- 위탁 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후 수의계약
  · 위탁 희망 동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 위탁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 예산: 102,96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합 계	운영비	강사수당	보조간사수당
신규위탁 (3개 동)	**102,960**	18,000 6,000천원 × 3개동	56,160 18,720천원 × 3개동	28,800 9,600천원 × 3개동

[재계약]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위탁 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 대상: 정림동 주민자치회
- 위탁 방법: 정림동 주민자치회와 수의계약
- 위탁 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 예산: 36,72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합 계	운영비	강사수당	보조간사수당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재계약	**36,720**	6,000	18,720	9,600	2,400

-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위원회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심의일시) 2026. 8. 20.(목) ~ 8. 24.(월) / 서면심의
  · (심의내용)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심의
  · (심의결과) 기존 수탁자(정림동 주민자치회)와 재계약 적격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주민자치회는 지역적 특성 파악 및 실질적인 수요 반영 등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에 적합함.

3.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 계획

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다. 관계 법령

참고-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 계획**

등록번호	자치행정과 -13249
등록일자	2026. 8. 13.
결재일자	2026. 8. 13.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자치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송수	윤건아	곽지연	강민구	최동규	2026. 8. 13. 전문학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이경			
예산팀장	강재형	조직평가팀장	성지은	
주무관	이소영	주무관	윤원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 계획

결재요지

□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 (수탁기관) 총 4개 동 / 재계약 1개(정림동), 희망 동 3개 동

○ (위탁사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유지, 자산 제외

○ (위탁금액) 연 139,680천원

* [재계약(정림동)] 36,720천원(운영비 6,000천원 강사 수당 18,720천원 보조강사 9,600천원 봉사활동 보상금 2,400천원)
* [신규(3개동)] 102,960천원 / 1개 동 34,320천원(운영비 6,000천원 강사 수당 18,720천원 보조강사 9,600천원)

□ **추진절차**

○ (재 계 약)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위수탁 협약

○ (신　　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위수탁 협약

※ 희망 동 7개 동 중 3개 동 선정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 계획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Ⅰ 추진배경

○ 정림동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만료('26. 12.)에 따른 재계약 시기 도래

○ 실질적 자치권한 및 주민자치회 기본 운영 토대 마련

○ 주민자치센터 위탁을 통한 주민자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Ⅱ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26.10.15. 字) 삭제 및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로 이관 및 시행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5조(기능) 및 제25조(운영)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Ⅲ 그동안 추진 사항

○ (2023. 1.)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2개 동 실시(정림동, 변동)

○ (2024. 1.) 변동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포기서 제출 및 위탁금 정산

○ (2024. 7.)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및 정림동 주민자치회 재계약 심의·의결서 제출

○ (2024. 9.)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4. 12.)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026. 7.)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수요 희망 조사(7개 동 희망)

* 복수동, 변동, 용문동, 둔산3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 (2026. 8.)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성과평가 실시 / 우수(92점)

Ⅳ 운영현황

1 주민자치센터 총괄 현황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운영)

○ **(사업내용)** 헬스장, 라인댄스, 요가교실, 풍물교실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

○ **(운영현황) 24개 동 194개** 운영 중 / 1개 동 위탁(정림동)

※ **프로그램 운영: 무료 이용 / 주민 민원 등 고려, 수강료 징수 여부 면밀한 검토 필요**

○ **(운영예산)** 634,520천원 / 동아리경연대회 제외(서구문화원 행사보조금)

구 분		금액(천원)	세 부 내 역
계		**634,52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운영비 (201-01)	542,600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 4,600천원×23개동 = 105,800천원 - 프로그램 강사수당 · 140개 프로그램×260천원×12월 = 436,800천원
	민간위탁금 (307-05)	34,32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 · 34,320천원×1개동(정림동) = 34,320천원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301-14)	57,600	-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 10,000원×1명×20일×24개동 = 57,600천원 * (지급기준)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10,000원 지급 市 자원봉사 지원 조례 시행규칙 활동경비 지급기준 적용

2 주민자치센터 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2년) * 최초 2023. 1. 1. ~ 2024. 12. 31.

○ **(위탁대상)** 정림동 주민자치회

○ **(위탁범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위탁금액)** 연 34,320천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000천원
- 프로그램 강사 수당 260,000원×6과목×12월 = 18,720천원
- **보조간사 수당 800,000원×1인×12월 = 9,6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11개 프로그램 / 에어로빅(서구체육회 지원), 헬스(자율), 단기 프로그램 별도 지원

· 오카리나
· 서예교실
· 요가교실
· 탁구교실
· 풍물교실
· 소도구필라테스
· 에어로빅 / 서구체육회 지원
· 헬스교실 / 자율이용
· 아동 리코더 / 단기 프로그램
· 아동 탁구 / 단기 프로그램
· 아동미술 / 단기 프로그램

Ⅴ 세부 추진 계획

1 위탁 개요

○ **(위탁대상)** 총 4개소 / 재계약 1개 동(정림동), 신규 희망 동 3개 동

○ **(수탁결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회와 수의계약 추진**

- (사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사목: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대전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 계약 가능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 **(위탁업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설 운영·관리 제외)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관리(신설·변경·폐강 등)
- 강사 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 해임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접수, 출결확인 등)
- 프로그램 민원 처리 및 관련 사무 처리 등

※ 시설 유지 보수, 자산 취득 및 내용연수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 등 현행과 같이 동 관리

2 추진 절차 ※ 재계약, 신규 수탁기관선정심사계획 각 별도 수립

○ **재계약**

위탁사무 성과 평가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민간위탁 동의안	⇨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26. 8.		'26. 8.		'26. 8.		'26. 9.		'26. 12.

- (성과평가)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8개 지표) / 92점(우수)
-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재계약 결정 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예정

○ **신규 위탁 / 희망 7개 동 중 3개 동 선정**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동의안	⇨	주민자치회 심의·의결 (수탁여부, 사업계획서)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탁대상 선정)	⇨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26. 8.		'26. 9.		'26. 11.		'26. 12.		'26. 12.

- (사전 수요 조사) 희망 동 7개 동(~'26. 7. 27.) / 복수동, 변동, 용문동, 둔산3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 (선정방법) 민간위탁 동의 이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3개 동 선정 심의·의결

※ 선정평가표(안): 정량평가(자치행정과: 주민참여도, 인구수, 프로그램 규모) / 정성평가(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3 위탁 예산

○ (위탁예산) 총 139,680천원 *프로그램 수에 따라 변동 예정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정림동 (1개 동)		신규계약 (3개 동)	
총 계		**36,720**		**102,960**
운영비	6,000천원×1개 동	6,000	6,000천원×3개 동	18,000
강사수당	260천원×6개×12월	18,720	260천원×6개×12월×3개 동	56,160
보조간사수당	800천원×12월	9,600	800천원×12월×3개 동	28,800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10,000원×1명×20일×12월	2,400	-	

○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반영 사유)

- **정림동 주민자치회**는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운영 중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성과 평가 등에 따라 **자생적 운영 체계가 정착된 상태임**
-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주민자치회 심의·의결 완료) 및 성과 평가 자료 제출 시 **자원봉사활동 보상금을 위탁금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함.**

※ 기존 동 재배정 예산(자원봉사 활동보상금)을 민간위탁금에 편성(예산 증감 없음)

※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 모집 가능,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수요자가 자원봉사자에 비용 지급 가능

○ (기타 사항)

- 신규 계약 3개 동은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미반영

※ 향후 성과 평가 및 자생적 운영 여건 고려,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위탁금 반영 여부 결정

○ (변경내역) '26. 본예산 대비 증 33,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세 부 내 역	증감내역
계		**634,520**	**667,520**		**증 33,000**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 운영비 (201-01)	542,600	472,640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 4,600천원×**20개동** = 92,000천원 - 프로그램 강사수당 · **122개 프로그램**×260천원×12월 = 380,640천원	감 69,960
	민간 위탁금 (307-05)	34,320	139,68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 · 36,720천원×1개동(정림동) = 36,720천원 · **34,320천원×3개동(신규) = 102,960천원**	증 105,360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 지원	자원 봉사활동 보상금 (301-14)	57,600	55,200	-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 10,000원×1명×20일×12월×**23개동** = 55,200천원 * (지급기준)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10,000원 지급 市자원봉사지원조례시행규칙 활동경비 지급기준 적용	감 2,400 (정림동 민간위탁금에 포함)

4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방식의 사무 수행 가능성	구청장은 주민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수탁기관의 기존 주민자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민간위탁유형: 사무, 시설형)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주민으로서 자치분야에 대한 지역적 특성 파악 및 실질적인 수요 반영이 가능하여 원활한 주민 협조로 사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
⑤ 성과 측정 용이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운영 성과 평가서를 통한 사무의 성과 측정이 용이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위탁 사무 관련 조례, 규정 및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서비스 공급의 영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가능

Ⅵ 향후 계획

○ (2026. 8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재계약)

○ (2026. 9월 중)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구의회)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9.7. ~ 9.22.)

○ (2026. 11월 중) 2027년 민간위탁금 본예산 편성

* 제300회 제2차 정례회 (11.13. ~ 12.16.)

○ (2026. 12월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신규)

○ (2026. 12월 중)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27. 1. ~ 2028. 12.)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이행

참고-2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3707
등록일자	2026. 8. 24.
결재일자	2026. 8. 24.
공개구분	비공개(5,6)

주무관	자치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전결 2026. 8. 24.
김충수	윤건아	곽지연
협조자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 자치지원팀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Ⅰ 구성현황

○ **(근　　거)** 「대전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구　　성)** 5명 (민간 4, 서구의회 의원 1, 공무원 1)

연번	구 분	성 명	비 고	연번	구 분	성 명	비 고
1	위촉(민간)	**이 상 복**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장	4	위촉(구의원)	**양 유 환**	도시건설위원회
2	위촉(민간)	**안 재 영**	유성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5	당연(공무원)	**곽 지 연**	자치행정과장
3	위촉(민간)	**곽 현 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Ⅱ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일시/방법)** 2026. 8. 20.(목) ~ 8. 24.(월) / 서면심의

○ **(심의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2026-1호	정림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심의

○ **(의결방법)** 심의안건 대해 적정 여부 결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방법)** 심사위원별 평가표에 채점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서명

※ 전체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재적위원(5명) 모두 적정 의결

위탁사무	점 수				심사결과 (적격여부)	수탁기관
	합산 점수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역사회 연계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95.8	40	35.8	20	적격	정림동 주민자치회

※ 심사위원 개별 심사 평균 점수(위원별 점수 붙임 심의의결서 참조)

Ⅲ 향후계획

○ **(2026. 8. 25.)** 선정결과 공고 / 「대전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 **(2026. 9.)** 민간위탁 의회 동의(제299회 제1차 정례회)

○ **(2026. 12.)**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구 ↔ 정림동 주민자치회

참고-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5조(운영)

[시행 2024. 9. 2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154호, 2024. 9. 27., 일부개정]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시설등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